

비엔피파리바은행 서울지점 정보기술부문 공시

전자금융감독규정 제8조 제3항에 따라 다음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시합니다.

1. 공시사유

- 전자금융감독규정 제8조 제2항에서 권고한 정보기술부문 인력비율 미충족

제8조(인력, 조직 및 예산)

②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인력 및 예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1. 정보기술부문 인력은 총 임직원수의 100분의 5 이상, 정보보호인력은 정보기술부문 인력의 100분의 5 이상이 되도록 할 것

2. 정보보호예산을 정보기술부문 예산의 100분의 7 이상이 되도록 할 것

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지 못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그 사유 및 이용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 등을 설명한 자료를 해당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매 사업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. 다만, 허가, 등록 또는 인가를 마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2. 전자금융감독규정 권고수준 (2019년 1월 현재 기준)

- 정보기술부문 인력 : 총 임직원수 (126명) 의 5% 이상 (**6.3명**)

3. 권고수준 충족 여부 및 현재 인력비율 (2019년 1월 현재 기준)

- 정보기술부문 인력 : 총 임직원수 (126명) 의 **4.8%** (**6명**)

4. 전자금융감독규정 권고수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유

- 총 임직원 수의 유동적인 변화 (115명~126명) 로 인해 보고시점의 정보기술부문 인력비율에 영향을 미침. 미충족 비율은 아시아태평양지역본부의 IT Production 에서 지원함. 2019년 내에 1명의 정보보안 추가인력 확충 예정

5. 이용자보호에 미치는 영향

- 비엔피파리바은행 서울지점은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영업을 영위하고 있지 아니 하며, 2018년 실시한 취약점분석결과 이용자 보호에 관련된 영향 없음.

본 공시 내용은 비엔피파리바은행 서울지점의 홈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.

2019년 1월 31일

비엔피파리바은행 서울지점